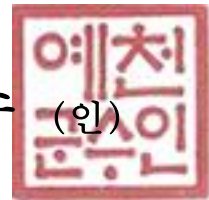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7일

예 천 군 수 (인)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등에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가. 행정예고 기간 : 2023. 3. 20. ~ 2023. 4. 4. (15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3. 3. 20. ~ 2023. 4. 4. (15일간)

다. 공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cg.kr>) 및 게시판

라. 관련근거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예천군청 안전재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3년 4월 4일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4-650-6159)

라. 제 출 처 : 경북 예천군 충효로 111(예천군청 안전재난과 4층)

마. 문 의 처 :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담당 ☎ 054) 650-6918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지구명	위 치	등급 및 규모			지정 사유
		유형	등급	면적(m ²)	
고향2지구 (곤충생태원)	효자면 고향리 588-1번지 일원	붕괴 위험 지역	D	2,200	손상 결함이 진전되고, 파괴 잠재성이 존재